

# 물리적 유해인자의 허용량(5)

가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소

환경위생과장 김정만

## (3) 작업과 휴식

표 1 및 그림 1에 표시한 고온폭로의 허용 기준은 휴식 장소의 WBGT 값이 작업장소의 그것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이다.

표 1. 고온폭로의 허용기준 ( °C WBGT )

폭로방법	작업량	경작업	중등작업	중작업
계속작업	30.0	26.7	25.0	
매시 75 %작업, 25 %휴식	30.6	28.0	25.6	
매시 50 %작업, 50 %휴식	31.4	29.4	27.9	
매시 25 %작업, 75 %휴식	32.2	31.1	30.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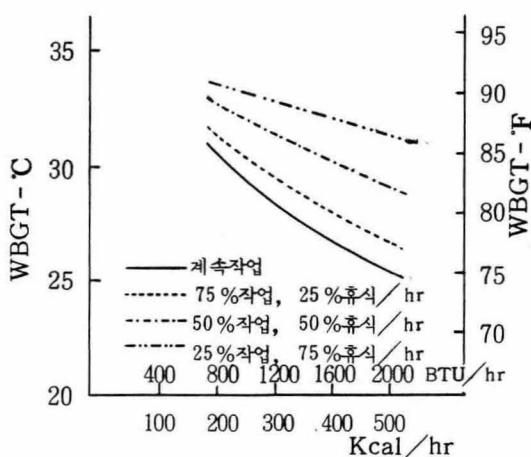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고온폭로의 허용한계

작업 장소의 WBGT 가 휴식 장소의 WBGT 와 다른 곳에서는 두 곳의 환경의 온열조건 및 신진대사의 시간 가중평균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시간 가중평균치가 사용될 때는 그림 1에서 연속작업이라고 표시된 solid line( 굵은 선 )을 사용한다.

시간 가중평균 대사량 ( M ) 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.

$$\text{평균 } M = \frac{(M_1) \times (t_1) + (M_2) \times (t_2) + \dots + (M_n) \times (t_n)}{(t_1 + t_2 + \dots + t_n)}$$

여기에서  $M_1, M_2 \dots M_n$  은 총작업시간 동안 근로자들의 여러가지 작업활동에 대한 추정 혹은 측정된 신진대사량이며,  $t_1, t_2 \dots, t_n$  은 시간연구에 의해 측정되어진 대응되는 장소에서 소비된 경과시간이다.

시간 가중평균 WBGT는 다음식에 의해 결정된다.

$$\text{평균 WBGT} = \frac{(WBGT_1) \times (t_1) + (WBGT_2) \times (t_2) + \dots + (WBGT_n) \times (t_n)}{(t_1 + t_2 + \dots + t_n)}$$

여기에서  $WBGT_1$ ,  $WBGT_2$ , …,  $WBGT_n$ 은 총작업시간 동안 사용된 여러가지 작업 및 휴식 장소에 대한  $WBGT$ 의 산출된 값들이다.  $t_1$ ,  $t_2$ , …,  $t_n$ 은 시간연구에 의해서 측정된 대응되는 장소에서 소비된 경과 시간이다. 수시간 혹은 전 작업시간 동안 고열폭로가 계속적인 경우는 1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평균치를 산출한다.

$$\text{즉 } t_1 + t_2 + \dots + t_n = 60 \text{ 분}$$

고열폭로가 간헐적인 경우는 2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치를 산출한다.

계속작업의 허용기준은 1주에 5일, 1일에 8시간 작업하되 오전 오후에 각 15분씩의 휴식시간과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된다. 이 이외에 휴식시간을 더 줄 때는 허용한계를 높여도 무방하다. 계획에 없는 휴식, 관리상 또는 작업상 필요로 하는 대기시간은 고온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할 때, 모두 휴식시간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.

작업량을 작업자가 자유롭게 조정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최대 작업능력의 30 ~ 50 %내에서 스스로 작업량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이다. 즉 작업속도를 늦추든가 자주 쉼으로써 이를 조절한다.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1일 평균 대사량은 330Kcal/hr 가 넘지 않는다. 그러나 8시간 작업중에는 시간당 평균 대사량이 높은 경우도 있다.

#### (4) 수분 및 염분 보충

더운 계절이나 인공적인 고열에 폭로될 때에는 근로자들은 소량씩 자주 물을 마실수 있도록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. 즉 15 ~ 20분마다 1컵 (약 150 ml) 씩 마시도록 한다. 음료수는 10 ~ 15 °C로 식혀서 작업장 근처에 두어 근로자들이 작업중에 손쉽게 언

제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한다.

고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음식물을 짭짤하게 먹도록 하고, 근로자가 고온에 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0.1 % 식염수를 마시도록 한다. 소금을 물에 탔을 때에는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차게 보관한다.

#### (5) 기타사항

##### (개) 의복

고열폭로의 허용기준은 고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입는 가벼운 여름옷을 입었을 때에 적용된다.

특정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두껍거나, 땀의 증발을 방해하거나 열차단력이 클 때는 열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표 1 및 그림 1에서 표시한 허용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. 특수 의복을 입고 일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허용한계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##### (내) 순화와 적응

여기서 권장하는 고열폭로의 허용기준은 고열에 순화되고 신체적으로 적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

